

장안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82(2016.8.24.)호로 변경 승인된 장안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및 기장군(창조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9. 20

부 산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장안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

다. 면적 : 1,300,921.7m²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기정 : 기장군수, 부산도시공사 사장

○ 변경 : 기장군수, 부산도시공사 사장, (주)광성계측기 대표이사 임병천

※ 금회 변경부분에 한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기정(부지조성 준공완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시행기간 : 2004 ~ 2011년

○ 변경(금회 변경부분에 한함)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개발

- 시행기간 : 변경 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나.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유치업종	면적 (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771,275.7	-	771,275.7	100.0	
전기장비제조업(28)	42,599.0	-	42,599.0	5.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93,341.1	-	93,341.1	1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489,153.3	감)8,853.7	480,299.6	6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57,081.1	-	57,081.1	7.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89,101.2	-	89,101.2	11.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0	증)8,853.7	8,853.7	1.1	

* 변경사유: 입주기업(광성계측기)의 사업분야 확장을 위한 허용업종 추가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적 (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300,921.7	-	1,300,921.7	100.0	-
산업시설용지	771,275.7	-	771,275.7	59.3	-
지원시설용지	44,341.2	-	44,341.2	3.4	-
공공시설용지	485,304.8	-	485,304.8	37.3	-
도로	210,028.8	-	210,028.8	16.1	-
주차장	8,719.5	-	8,719.5	0.7	-
공원	178,386.5	-	178,386.5	13.7	-
녹지	65,258.7	-	65,258.7	5.0	-
저류시설	22,911.3	-	22,911.3	1.8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다. 공공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7.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변경부분에 한함)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A	1-1, 2-1~4 3-1~4, 4-1~3, 5-1~4, 6-1~4, 7-1~2, 8-1~2, 9-1~2, 10-1~2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
			건폐율	• 80%이하	-
			용적률	• 350%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변경	A	1-1, 2-1~4 3-2~4, 4-1~3, 5-1~4, 6-1~4, 7-1~2, 8-1~2, 9-1~2, 10-1~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
			건폐율	• 80%이하	-
			용적률	• 350%이하	-
			높 이	• 5층이하	-
신설	F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건폐율	• 80%이하	-
			용적률	• 350%이하	-
			높 이	• 5층이하	-

8.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